

신고 의무

1) 단기체류 외국인: 관광, 방문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90일 이하의 기간 동안 머물 수 있는 단기체류 자격을 소지한 외국인이 숙박업소 투숙 시 숙박업자에게 여권 또는 여행 증명서를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.

※ 외국인등록증,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등을 소지한 외국인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.

2) 숙박업자: 「공중위생관리법」에 따라 ‘숙박업’으로 신고한 숙박업자 또는 「관광진흥법」에 따라 ‘관광숙박업’, ‘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’, ‘한옥체험업’으로 등록된 숙박업자는 **단기체류 외국인이 제공한 정보를 외국인이 숙박한 때 또는 경보발령 12시간 이내에 법무부에 신고**해야 합니다.

※ 여권 등 자료를 제공하지 않거나 허위정보를 입력한 외국인 또는 숙박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숙박업자의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100조 3항에 의거하여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
신고 방법

1. **숙박신고시스템(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)**을 이용하여 신고합니다.
2. 숙박신고시스템 이용 불가한 경우 법무부에서 제공하는 신고서식을 활용하여 **E-MAIL, 팩스, 전화, 휴대폰 문자 메시지** 등을 통해 관할 출입국·외국인 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.

우리함께 이겨내요



아래 QR코드를 인식하여
모바일 앱을 다운로드 하세요.

안드로이드



iOS(아이폰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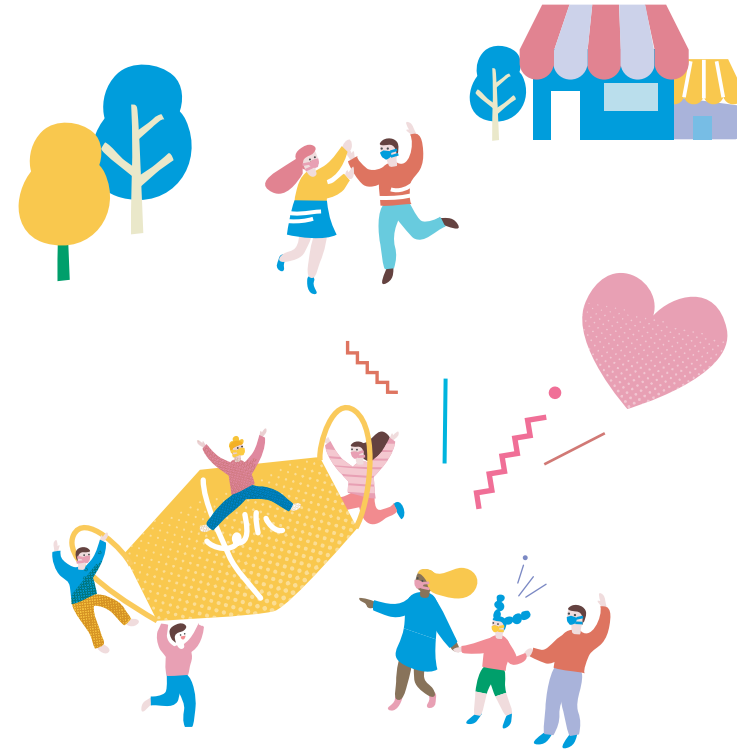
궁금한 점이 있나요?

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에 연락하시면 친절히 알려드리겠습니다.

대표 전화번호 | (국번없이) 1345

단기체류외국인 숙박신고 제도

외국인 숙박신고를 통해
테러 및 감염병으로부터
안전한 대한민국을
만들어주세요.



단기체류 외국인

숙박신고 제도를 안내합니다.

단기체류 외국인의 숙박정보를 숙박신고시스템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을 이용하여 쉽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.



제도 개요

대한민국에 입국 후 90일 이하 단기간 체류하는 외국인이 숙박업소에 머무르는 경우 숙박업자가 해당 숙박 외국인의 정보를 신고하는 제도입니다.

법적 근거

「출입국관리법」 제81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69조의2

신고 시기

1.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감염병 확산 및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8조 제2항에 따른 “관심” 단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
2. 「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」 제22조 제2항에 따른 “주의” 단계 이상의 테러경보가 발령된 경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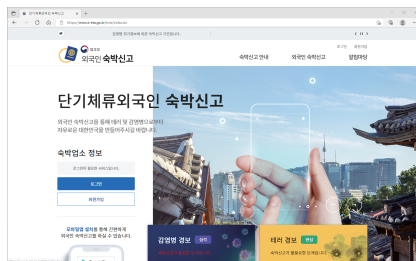
신고 방법

외국인 숙박신고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에서 빠르고 간편하게 신고하세요.



웹 사이트 신고하기

하이코리아 웹사이트(www.hikorea.go.kr)에 접속하여 외국인 숙박신고 배너를 통해 이동하거나 숙박신고 웹 사이트 접속 후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. 직접 접속을 위해서는 주소창에 www.k-eta.go.kr/trds를 입력하세요.



직접 입력

웹 사이트에서 직접 입력하여 신고 가능합니다.



엑셀파일 업로드

엑셀파일에 신고 대상의 정보를 일괄 입력하여 한 번의 업로드로 신고 가능합니다.



여권판독기 인식

여권판독기에 여권 인적사항면을 인식하여 간편하게 신고 가능합니다.

- * 현재 스마트코어 FASTpass@P1만 지원합니다.
- * 설치 관련사항은 www.fastpass.co.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
모바일 앱에서 신고하기

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‘숙박신고’ 검색 후 숙박신고 모바일 앱을 설치하여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.



직접 입력

모바일 앱에서 직접 입력하여 신고 가능합니다.



QR코드 인식

입국 시 교부한 입국심사증의 QR코드를 인식하여 간편하게 신고 가능합니다.

* 입국심사증을 이용한 신고는 추후 서비스 예정입니다.



OCR 인식

여권 인적사항면의 OCR을 인식하여 간편하게 신고 가능합니다.